

2006. 4. 24(월) 10:00



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의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9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5
7.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8.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 23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1일(제2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15호

2. 제정이유

-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 1.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0조에 의거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 현행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구성 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
 - 임 기 : 2년(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나. 주요 심의사항(안 제3조).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 관리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여부

다.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정운용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코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통보되어 동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거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거창군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1일(제2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16호

2. 개정이유

- 『8. 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정원의 조정

- 공무원정원 : 677명 → 680명 (8. 31 부동산대책관련업무: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63명 → 666명(증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현행과 같음)

나.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조례안의 추진배경은 모든 주택·토지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와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04년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시행과 관련된 조치사항으로 판단되며

- 또한, 2005년. 8월 개발완료되어 적용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 등 최근 자치단체에 토지관련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토록 한 후 증원승인(신창: 7급 3명 → 승인 7급 1명, 9급 2명) 통보되어 후속적인 조치로써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시에는 입법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시에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하고, 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2004. 12.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기본인력계획수립일 : 2006. 2. 20 도지사 협의요청일 : 2006. 2. 22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살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1일(제2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17호

2. 개정이유

- 이장 업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 보상과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이장의 사기진작 조항 신설(안 제6조).
 -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단체보험 가입
 -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 연 2회
 - 체육·수련대회(군단위) : 연 1회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이장들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제공, 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 등을 추진하여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최소한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 제6조의 신설은 2005년 12월 2일 제24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제도 시행이 안건으로

채택되어 2006년부터 시행, 결정한 후 2005년 1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본제도의 시행계획 통보(행정과-14624호)에 의해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지만 도내 전시군의 이·통장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개정조례 시행시 이장의 각종 사건사고시 최소한의 보상 등이 가능해 이장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기 예산편성 : 20,000천원(거창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행사)

- 그리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개진으로써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횟수(2회 → 1회)와 연수 횟수(2회 → 1회)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과 배치된 부분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한 사항이 있었으나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우수 이장 국·내외 연수부분은 대상자 선정, 소요예산 및 규모 등 시행방법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18호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소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임으로 삭제(안 제26조).

다.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조정(안 제28조).

- 현행 : 2분의 1은 7. 16 ~ 7. 31일, 2분의 1은 9. 16 ~ 9. 30일
- 개정 : 전액을 7. 16 ~ 7. 31일

라. 공매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규정 신설(안 제37조제3항)

마. 담배소비세 세율변경 및 저가 담배소비세 규정 삭제(안 제56조)

- 흡연용 권련 1갑당 담배소비세 510원→ 641원,
- 판매가 200원 이하인 담배소비세→ 삭제

바. 무소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차 전환차량(부 칙)

- '09. 12. 31까지→화물차로 과세, '10년→ 33%, '11년→ 66%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소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 안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는 1매당 50만원 이하인 군세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항이고

- 안 제26조(과세표준)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한 사항이며
- 안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은 그 동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려는 사항과
- 안 제37조와 안 제39조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문 정비와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신설 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이밖에도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납기변경 및 부칙의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19호

2.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 2m²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화물적재면적 2m²미만(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1)

- 다.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라. 터미널용 토지 50%감면 조항을 삭제 (안 제15조 및 제21조)
- 마.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히 함(안 제16조)
 - 토지 및 지상건축물 → 토지 · 지상건축물 · 주택
- 바.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업도시개발 구역을 추가(안 제23조).
- 사.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가액(5 12 31)을 삭제(안 제25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임대주택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m²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안 제5조의 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토록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한 사항이고

-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그 동안 관련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의 개념에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감면 조례를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한 사항이며
 - 안 제15조 및 제21조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이미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해 삭제된 것으로 검토됨. ※ 종전 별도합산(2/1,000~4/1,000) → 분리과세(2/1,000)로 전환
- 이밖에도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 투자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추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 삭제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20호

2. 제정이유

-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경리관)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 나. 계약심의위원회 임기(안 제3조)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연임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입찰참가지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

마.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안 제8조, 제10조)

-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 군수는 그 사항을 반영

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함(안 제12조)

- 주민참여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상한금액 : 일반(전문)공사(전기·소방포함) 추정가격 400억원 이하

사.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우선 동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에 대한 제정근거는 상위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또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별표 1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400억원으로 폭넓게 확대한 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정신을 따른 것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의지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행위로 판단됨.
- 기타 관련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나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21호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공포)으로 분법 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사항의 대장가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5조).
 - 당초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상향
- 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안 제17조)
- 다. 사용 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전산자료로 같음(안 제21조).
- 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행정·보존재산으로 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시행(안 제22조).

- 마. 건물대부료 신출에서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일률적으로 30% 적용(안 제31조).
-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 전년도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경작용 50%, 주거용 45%, 기타 40% 경감 적용
- 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대부재산정리부를 전산 자료로 갈음 할 수 있음(안 제36조).
- 아. 수의 매각 범위 축소(안 제40조).
 - 농업진흥구역내 5년이상 대부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 사용자에게 대한 수의 매각 조항 삭제
- 자. 군, 사업소, 읍면 등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 적용(안 제47조).
- 차.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기능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63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05. 8. 4)으로 분법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격을 당초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토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 안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는 재산관리 재원 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외 사용을 방지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 하며
- 안 제17조(무상사용기간)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대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안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안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안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등 기타 관련 조문의 규정들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22호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공포)으로 분법 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성과단에 물품운용관 지정(안 제2조).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부여(안 제4조).
- 기증품 취득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물품의 기증 또는 증여시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
- 장부의 작성시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 같음(안 제25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변경 사항으로서 안 제2조(관리책임)은 물품 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한 조항이며
 - 안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제4조(사무의 위임),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는 회계관직에 대한 직무를 정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며, 중요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한 조항이고.
 -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는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는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기타 관련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25호

2.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
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의 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 요양병원의 시설을 확충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취득재산의 표시

| 재산 종별 | 재 산 소 재 지 | 지목 및 물 건 | 면적 (㎡) | 예정가격 (천원) | 취득사유 | 취득재산 소유자 | 비고 |
|----------|----------------|-------------|-----------|--------------|------|-------------|------|
| | 계 | | | 1,675,448 | | | |
| 건물 | 거창읍 송정리 719-4 | 건물 | 1,065 | 1,675,202 | 증축 | 거창군 | |
| 토지 | 거창읍 송정리 산42-18 | 임야 | 996 | 246 | " | " | 기부채납 |

○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

| 구 분 | | | 당초(기존) | | | 변경(증축) | | | 합 계 | | |
|--------|------------|-----|--------|-----------|------------|--------|-----------|------------|-----|-----------|------------|
| | | | 건수 | 수량 (㎡) | 금액 (천원) | 건수 | 수량 (㎡) | 금액 (천원) | 건수 | 수량 (㎡) | 금액 (천원) |
| 취 득 | 계 | 토 지 | 1 | 3,297 | 830 | 1 | 996 | 246 | 1 | 4,293 | 1,076 |
| | | 건 물 | 1 | 1,283 | 1,883,000 | 1 | 1,065 | 1,675,202 | 1 | 2,348 | 3,558,202 |
| | | 병상수 | 1 | 50 | | 1 | 80 | | 1 | 130 | |
| | 1.매입 | 토 지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2.교환 취득 | 토 지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3.기타 취득 | 토 지 | 1 | 3,297 | 830 | 1 | 996 | 246 | 1 | 4,293 | 1,076 |
| | | 건 물 | 1 | 1,283 | 1,883,000 | 1 | 1,065 | 1,675,202 | 1 | 2,348 | 3,558,202 |
| | | 병상수 | 1 | 50 | | 1 | 80 | | 1 | 130 | |
| 처 분 | 계 | 토 지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4.매각 | 토 지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5.양여 | 토 지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6.교환 처분 | 토 지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19-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공유재산인 거창군립요양병원의 증축사업을 위하여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시안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증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자 현재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19-4번지 거창군 군립요양병원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 건립부지 996㎡(기존 3,297㎡), 건축연면적 1,065㎡(기존 1,283㎡)로 하여 병상수 80병상(기존 50→130)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675,202천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소요사업비 1,675,202천원중 1,445,820천원(국비 722,910, 도비 361,455, 군비 361,455)은 본관 증축사업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담장, 조경, 진입로 정비 등의 부대사업비 229,382천원이 부족하여 '06년 1회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사업이 완성되면 그동안 거창군 요양병원의 규모가 현재 50병상 규모밖에 되지 않아 군 관내 및 인근지역 등 환자 수요충족에 다소 역부족한 면과 요양병원 손익분기점인 100병상 규모에 못 미쳐 독립채산제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만성적자를 탈피하여 흑자운영 전환도 가능하리라 보며, 병상증축 운영시 노인복지 의료 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봄.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거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군 자체심사 : 10억이상~30억 미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증축관련 국고보조금이 2005년 10월 17일 통보(가내시) 되었으나, 2006년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례들은 향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증축사업에 따른 당초예산의 확보와 대행사업 수탁협약서 체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4. 24(월)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23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종 연)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현행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안 제5조).

-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안 제7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 검토
-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및 해촉 조치를 취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종 목)

가. 본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통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위험요인,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 현지조사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용역 등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관련
 -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위원장), 안 제13조(간사)를 종합하면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위원, 복구지원담당이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조례 표준안에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는 자연재해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이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실·국이 있는 자치단체를 표준으로 하여 표준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 조직형태로 볼 때 표준안의 자연재해 담당국장은 자연재해담당과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토위원회의 기능이 서면검토가 원칙이고 방재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만큼

군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군수보다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해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2조, 안 제4조 수정의견

| 원 안 | 수 정 의 견 |
|---|--|
|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u>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u>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p> |
| <p>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u>위원장은 부군수가</u>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u>사무를</u>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u>위원회</u>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p>제3조(위원장) ①.....<u>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u>은 <u>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u>..... ②..... <u>그 사무를</u> 총괄한다. ③.....<u>검토위원회</u>..... </p> |

○ 안 제3조(위촉장의 교부)와 관련

-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한편, 제2조에서는 위원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부장과 위원장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고 서로 상충되며,

단순히 위촉장 교부만을 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3조 관련 수정의견

| 원 안 | 수 정 의 견 |
|--|---|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 <삭 제> |
| 제4조 ~ 제14조 (생략) | 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
|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검토의견 제출).....제6조..... |
|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 제11조(회의록) ①제4조.....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라. 종합적으로

-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의 강화로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임.
- 본 조례에 의한 검토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각종 사업허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점이 있고, 집행부의 추정에 의하면 향후 위원회의 연간 처리건수가 50건 정도로 예상되고 또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등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임
-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늦어도 지난해 연말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사업 중 8건이나 검토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끝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김 정 회 의원

나. 수정이유

-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불명확하고 통일되지 못한 일부 자구의 정리 등

다. 수정 주요내용

-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안 제3조를 삭제.
- 안 제4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안 제3조 내지 제13조로 함
- 안 제4조 제1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다음에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항 “사무”를 “그 사무”로 함.
- 안 제12조제1항 “간사”를 “총무”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14조를 각각 안 제3조 내지 안 제13조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다음에 “(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를 “그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검토위원회”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항 중 “간사”를 “총무”로 한다.

안 제13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항 중 “간사”를 “총무”로 한다.

안 제1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 <삭 제> |
| 제4조 ~ 제14조 (생략) | 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
| 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그 사무..... ③.....검토위원회..... |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제4조(검토위원회 운영) ①.....위원장과 위원장이.....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
|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6조 |
|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①제4조.....총무..... 1. ~ 7. (현행과 같음) ②.....총무..... |
| 제13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 4. (생략) | 제13조(총무) ①제4조.....총무..... ②총무..... ③총무..... 1 ~ 7. (현행과 같음) |
|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